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99
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27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10월 31일, 김선갑 의원 (찬성자 10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11월 27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선갑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하천법」의 개정(2016.1.19.)으로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(법 제89조)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허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제11조 삭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하천법」(이하 “법”)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(법 제89조¹⁾)를 폐지함에 따라 이에 맞게 「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제11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[표 1]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11조)

현행	개정안
<p><u>제11조(허가수수료의 징수) ① 「하천법」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관리청이 현금 또는 서울특별시수입증지(자치구청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수입증지)로 부과징수하거나 해당관리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하천관리청은 점용허가 등의 신청이 제7조 또는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제></p>

- 서울시 역시 그동안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징수한 내역이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. 다만, 법의 개정(2016.1.19.) 및 시행(2016.7.20.)이 2016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함에 따라 자칫 시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1) 제89조(허가수수료) ①제30조·제33조·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②공용·공공용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없음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제11조(허가수수료의 징수) ① 「하천법」 제 8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관리청이 현금 또는 서울특별시수입증지(자치구청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수입증지)로 부과 징수하거나 해당관리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하천관리청은 점용허가 등의 신청이 제7조 또는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